

<p>는데 사실 지난 번 우리 補佐官問題로 인해 가지고 우리 市議會 議員님들 全體가 제가 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現在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本議員이 엄청나게 잘 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重要的事項을 아까保留자는 議員님의 말씀도 안 지가 3日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場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앉아 계시는 議員님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는 분 몇 분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運營委員會 委員님들께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이问题是 우리가 더 檢討할 수 있는, 더 法律의으로 알 수 있는 時間이 꼭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이 案을 이번 會期에 通過를 시키지 말고 保留하는데 本議員이 動議에 再請을 합니다. 감사합니다.</p>	<p>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議員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集計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83名中贊成 17名, 反對 63名, 留權 3名으로서 保留하는 것에 대해서는 否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 (議事権 3打)</p> <p>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關한條例를 審議保留하는데 動議가 否決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言·鑑定等에關한條例를 表決할 것을宣布합니다.</p> <p>(議事権 3打)</p> <p>먼저 動議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原案이죠?」하는 議員 있음) 原案 贊成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反對하고 保留는 다른 것이에요」하는 議員 있음) 保留는 끝났고요, 原案에 대한 反對입니다.</p>
<p>(「再請입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p>
<p>三請있습니까?</p>	<p>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p>
<p>(「三請입니다」하는 議員 있음)</p>	<p>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表決)</p>
<p>그러면 여러 議員들 이 案件에 대해서 保留를 하는 것을 同意하십니까?</p>	<p>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83名中贊成 64名, 反對 14名, 留權 6名으로서 同條例案은 可決되었음을宣布합니다.</p>
<p>(「同意합니다」하는 議員 있음)</p>	<p>(議事権 3打)</p>
<p>그러면.....</p>	<p>.....</p>
<p>(「아닙니다」하는 議員 있음)</p>	<p>(參照)</p>
<p>아니에요? 그래서 表決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려고 그립니다.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保留를 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p>
<p>(起立表決)</p>	

<p>“의회”라 한다)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증인출석등의 의무) 의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다른법령 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p>④16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p> <p>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의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p> <p>제5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이 조례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p>	<p>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서는 늦어도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요구일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p> <p>④제1항의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⑤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6조(증인등에 대한 동행명령) ①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p> <p>③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해당증인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여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해당증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증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④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해당증인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p> <p>⑤동행명령장은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p> <p>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전에서 같다)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p>
--	---

할 수 있다.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한다.
③선서하기 전에 증언·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도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선서의 방식)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9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전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전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의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 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의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다만, 이 조례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의 요구를 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백은 의회에서 안전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검증) ①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고발) 의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이 제1항의 검증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제16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서울特別市立藝術團體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